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시험방법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직렬(직류)	직급	인원(명)	
합 계					125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교육행정	일 반	9급	103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장 애 인	9급	4	
			저소득층	9급	3	
			전 산	9급	2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사 서	9급	4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시 설 (일반토목)	9급	2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간 호	8급	4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소 계					122	
제2회 임용시험	경력 경쟁	일 반	공 업 (일반기계)	9급	2	1차: 물리 2차: 기계일반, 기계제도
		기술계고	시 설 (건축)	9급	1	1차: 물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소 계					3

※ 제2회 임용시험인 경력경쟁시험(일반, 기술계고등학교)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함
 - 물리는 ‘물리학 I’ 에서 출제되며, 기계설계는 ‘기계제도’ 로 과목명 변경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구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비고
과목	5과목	3과목	- 객관식 4지 택 1형 - 과목별 20문항
시험시간	100분(10:00~11:40)	60분(10:00~11:00)	

※ 시험시간 연장은 장애인 모집구분이 있는 교육행정(장애인)의 해당 응시자에 한함.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 적용 기준일: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동법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나 응시연령

시험 구분	직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8·9급	18세 이상	2005. 12. 31. 이전 출생자

※ 예외: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은 2023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6. 12. 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

다 거주지 제한

○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합니다.

①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거주 기간 합산 요건(3년) 계산 방법은 「민법」 제160조제1항을 따름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도 위 요건과 같으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은 원서접수일 현재 광주광역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면 응시가능 합니다. (거주지 제한 없음)

라 자격증·면허증 제한 [사서·전산·간호직렬]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한 해당 자격증·면허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구분	직렬	자 격 증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전산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간호	조산사, 간호사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최종 시험 시행일(면접시험 최종일) 까지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 가능함.
- ※ 2024년부터는 전산직렬 응시자격 요건인 필수자격증이 삭제됨.

마 자격 요건[경력경쟁임용시험(일반) 공업(일반기계) 직렬]

○ 자격 기준

구분	직렬(류)	자격요건
제2회 임용시험 (경력경쟁 /일반)	공업 (일반기계)	<p>아래 ①번과 ②번의 자격 요건 중 <u>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u></p> <p>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후 당해 시험 공고일 이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p>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당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p> <p>※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봄</p>

○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 기간: 2023. 7. 17.(월) 09:00~ 7. 21.(금) 18:00 [점심시간(12:00~ 13:00) 제외]
- 제출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등기우편은 7. 21.(금)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제출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본관 1층)

※ 서류전형 결과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응시자격이 없음

(제출 서류 보관은 서류 접수 마감일인 2023. 7. 21.(금) 18:00까지만 가능)

※ 응시대상자는 서류 제출과 별도로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해야함

경력경쟁임용시험(일반) **공업(일반기계)** 직렬 응시대상자 제출 서류

- ① 주민등록표 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이전 주소가 포함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② 자격증 사본 1부.
 -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없이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자격만 보유한 경우, 해당 자격증은 당해 시험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③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서식 1】 사용, 사업자등록업체에서 발행한 2년 이상 근무 경력
 - 경력 기간: 시험 시행 공고일 이전 경력으로, 주 5일 근무, 1일 8시간(주 40시간) 이상 정규 근무한 형태를 상근 근무로 인정하며, 비상근 형태로 근무한 경우에는 1일 8시간(주 40시간)으로 환산하여 경력 산정
- ④ 근무사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위탁업체의 근무로 경력증명서의 소속 회사명과 근무지가 다른 경우 제출
 - 【서식 2】 사용, 경력증명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
-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등록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⑥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서식 3】 사용

서류 제출 시,

- 봉투 겉면에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공업-일반기계 직렬) 임용서류 재중** 반드시 표기
- [등기우편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93 (우편번호 61987)
광주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임용시험 담당자 앞

※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2023. 8. 7.(월) 예정, 시교육청 홈페이지

※ 추후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

바 기술계고등학교 구분모집

- 응시자격: 광주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특성화학과 포함) 건축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학교장 추천이 있어야 응시 가능합니다.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자격 요건

- 자격 기준 : ①+②+③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①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 시설(건축): 건축과, 건축인테리어과

※ 해당학과는 2023학년도 3학년 졸업예정자 기준 학과이며, 이전 졸업자의 경우 생활기록부 등을 통해 건축관련 학과 졸업 증명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예: 건축디자인과, 건축인테리어학과)

※ 2023년부터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 가능

② 아래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

- 성적합산기준: 졸업자는 고등학교 3학년 성적,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구 분	내 용
성취평가제 적용	전문교과 성취도 평균 B이상이며, 보통교과 평균 성적 해당학과에서 상위 30%이내인 자
성취평가제 미적용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서 학과 평균 성적이 해당학과에서 상위 30%이내인 자

③ 졸업자는 대학(4년제,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 대학 등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 재학·휴학·졸업의 학력이 없는 자 (당해 추천서 접수 마감일 기준)

- 기술계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는 지원 가능
- 추천 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한 후 추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있으면 합격 및 임용 무효 처리

- 학교장 추천서 제출: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응시 희망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에 첨부한 【붙임1】 2023년도 광주광역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로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로부터 추천서가 제출 기간 내에 우리 교육청 총무과로 접수되어야 함

※ 원서접수: 학교장 추천과는 별도로 해당직렬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응시자가 제출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 임용이 취소되며, 해당 학교는 향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 장애인 구분모집

- 응시자격: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등급이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합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붙임 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에 따라 지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장애인 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증명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안내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저소득층 구분모집

-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① 세대주가 그 기간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인 경우 ②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던 경우에는 수급자(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 체류한 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급여(지원) 신청 또는 급여(지원)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 교환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해외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 및 종료 시점)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명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문제 출제 (인사혁신처 위탁)

시험방법	출제과목	문제 공개	문제지 회수
제1회 임용시험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총 13과목	공개	미회수
제2회 임용시험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건축계획, 건축구조 ☞ 총 5과목	공개	미회수

5 시험 일정

가 제1회 임용시험 일정

구분	공개경쟁임용시험
인터넷 원서 접수	2023. 4. 10.(월) 09:00~ 4. 14.(금) 18:00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23. 5. 18.(목)
필기시험일	2023. 6. 10.(토)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2023. 7. 5.(수) 10:00~ 7. 6.(목) 18:00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023. 7. 10.(월)
면접시험일	2023. 7. 28.(금)
최종합격자 발표	2023. 8. 7.(월)

나 제2회 임용시험 일정

구분	경력경쟁임용시험(일반)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서류전형(학교장 추천서) 접수	2023. 7. 17.(월) 09:00~ 7. 21.(금) 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8. 7.(월)	
인터넷 원서 접수	2023. 8. 21.(월) 09:00~ 8. 25.(금) 18:00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23. 10. 16.(월)	
필기시험일	2023. 10. 28.(토)	

구분	경력경쟁임용시험(일반)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2023. 11. 7.(화) 10:00~ 11. 8.(수) 18:00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023. 11. 15.(수)	
면접시험일	2023. 11. 29.(수)	
최종합격자 발표	2023. 12. 6.(수)	

※ 제1회 및 제2회 임용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 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시험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결과,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http://www.gen.go.kr) 『알림마당-시험공고』에 공고

- ※ 합격 여부 및 본인 성적 확인 ☞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gen.go.kr\)](http://edurecruit.gen.go.kr)
- 필기시험 불합격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 필기시험 합격자: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기간

시험명	시험방법	구분	기간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경력경쟁(일반)	원서접수	2023. 4. 10.(월) 09:00~ 2023. 4. 14.(금) 18:00
		원서접수 취소	2023. 4. 10.(월) 09:00~ 2023. 4. 17.(월) 18:00
제2회 임용시험	경력경쟁 (일반, 기술계고)	원서접수	2023. 8. 21.(월) 09:00~ 2023. 8. 25.(금) 18:00
		원서접수 취소	2023. 8. 21.(월) 09:00~ 2023. 8. 28.(월) 18:00

나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처: [광주광역시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gen.go.kr\]](http://edurecruit.gen.go.kr)
→ 『지방공무원 채용』에서 접수 가능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마감일 마감 시간대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오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24시간 접수 및 취소 가능

- 제1회 임용시험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2023. 4. 14.(금) 18:00
- 제2회 임용시험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2023. 8. 25.(금) 18:00

다 응시수수료 납부 및 환불

- 응시수수료: 5,000원
- 납부방법: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 ※ 교육행정(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아도 응시원서가 접수됩니다.
- 응시수수료 환불: 취소 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환불이 가능하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취소 기간 이후에는 환불 불가)

라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용 사진】**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사진파일: 3.5cm x 4.5cm(파일 100kb이하), JPG형식, 해상도 100dpi, 컬러증명사진
 -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상반신)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선글라스 또는 모자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 불가
- **【응시원서 수정·취소】**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응시원서 수정 및 취소가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접수 및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능하고 취소만 가능합니다. (단,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입력 가능)
- **【중복접수 불가】** 선발직렬 및 모집 구분별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접수 확인】** 원서접수 후 응시원서 반드시 확인(출력한 응시원서에 접수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정상처리)해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 응시자 과실로 인해 응시가 불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자격요건 및 가산점 적용】** 거주지 제한 등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점 적용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학교장 추천】**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응시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원서접수 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지 않은 사람이 원서를 접수할 경우 해당 원서접수는 취소되고, 응시수수료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 **【PC 환경】** 운영체제 윈도우 8~11,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마 응시표 출력 · 지참

- 응시표는 아래 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제1회 임용시험: 2023. 5. 22.(월) 10:00~ 2023. 6. 10.(토) 18:00
 - 제2회 임용시험: 2023. 10. 16.(월) 10:00~ 2023. 10. 28.(토) 18:00
- ※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반드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응시번호 확인

7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 비율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가산점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 시 적용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가산점 하나만 선택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집단위 10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취업지원 또는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나 취업지원대상자

- 적용 기준일: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가산 기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며,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선발 상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

- 적용 기준일: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적용 대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가산 기준: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가산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선발 상한: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의사상자 등 대상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

라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적용 기준일: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
- 적용 대상: 아래 제시된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 가산 기준: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 **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해당분야 응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은 제외]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가산 비율
교육 행정	교육 행정	-		변호사	5%
시설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5%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3%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가산비율
시설	일반 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5%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마 가산점 적용 관련 유의사항

-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5% 또는 10%)을, 의사상자 등 대상자인 경우 증서번호와 가산비율(3% 또는 5%)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증 가산점수는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1개만 인정됩니다.
- 가산점 적용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안내하는 기간 내에 가산점 적용 증명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8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 적용 기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 적용 직렬: 교육행정(일반)
- 채용 목표: 시험 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 인원 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합니다.
-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 인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3점을 곱한 점수)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 채용목표 인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9 장애인 · 저소득층 초과 합격제

- 적용 직렬: 교육행정(장애인), 교육행정(저소득층)
- 실시방법
 - 필기시험에서 교육행정(일반) 합격선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처리하며,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된 인원의 67% 범위 내에서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단, 필기시험 초과합격인원이 1명인 경우 1명을 추가합격 조치)

10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10% 범위(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에서 총득점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10% 범위(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정결과는 다음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우수: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 으로 평정한 경우
 - 보통: “우수” 및 “미흡” 외의 경우
 - 미흡: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 로 평정한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경우

다 최종 합격

-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합니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합니다.
-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합니다.
-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라 추가 합격자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그 밖의 합격자 결정 방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지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시험지 배부 후에는 시험실 입실 불가)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기기(휴대전화, PMP, MP3, 무선호출기, 태블릿 PC 등) 및 전자기기(스마트워치,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스마트안경, 전자담배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하며, 통신·전자기기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전원을 차단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명서류를 안내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및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은 취소됩니다.
-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 가능
 - 답안 수정 시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답안지에 수정액,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점수는 스캐너 판독 결과에 따라 산출하며,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함.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관계없이 예비 표기를 하여 발생한 불이익(중복답안 판독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답안 작성 시, 답안의 표기란에는 '●'와 같이 바르게 표기해야 함
 - <예시> 올바른 표기: ●, 잘못된 표기: ◐ ◑ ◒ ◓ ◔ ◕ ◖ ◗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시험감독관의 시간 안내나 시험실 내 시계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산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시계, 문자 송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 등은 시험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4년간 타 시도 등 전출이 제한됩니다.
 -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 유예 불가

12 시험제도 변경사항 사전안내

【2023년도부터 변경되는 사항】

○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응시자격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특성화학과 포함) 해당(관련)학과 졸업자 및 2024년 2월 졸업예정자(2023년의 경우)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특성화학과 포함) 해당(관련)학과 졸업자 및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2023년의 경우) *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 가능

【2024년도부터 변경되는 사항】

○ 특수직급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격증 삭제

- 전산직렬 응시자격 제한 필요성이 낮아 응시요건 필수자격증 삭제

직렬	변경 전(현행)	변경 후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삭제>

○ 특수직급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신설

- 전산직렬 응시자격증 삭제함에 따라 가산대상 자격증 신설

직렬	변경 전(현행)	변경 후						
전산	해당없음	<table border="1"> <thead> <tr> <th>자격증</th> <th>가산 비율</th> </tr> </thead> <tbody> <tr> <td>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td> <td>5%</td> </tr> <tr> <td>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td> <td>3%</td> </tr> </tbody> </table>	자격증	가산 비율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5%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3%
자격증	가산 비율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5%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3%							

○ 신규임용시험(연구사) 응시연령 하향

변경 전(현행)		변경 후	
연구사	20세 이상	연구사 · 9급	18세 이상
9급	18세 이상		

○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전문교과 이수요건 적용

변경 전(현행)	변경 후
제한 없음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요건 적용

13 기타

-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붙임2】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지원 제공 안내에 따라 신청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1회 임용시험: 2023. 4. 10.(월) 09:00~ 2023. 4. 17.(월) 18:00
 - 제2회 임용시험: 2023. 8. 21.(월) 09:00~ 2023. 8. 28.(금) 18: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총무과 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gen.go.kr> 『알림마당-시험공고』】**
 - 인터넷 원서접수: 광주광역시교육청 총무과 **【☎(062)380-4120】**
 - 기타 임용시험 관련 문의: 광주광역시교육청 총무과 **【☎(062)380-4120】**

- 붙임 1. 2023년도 광주광역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 1부.
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1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알림마당-시험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서식 1】

「공업(일반기계) 직렬」 경력경쟁임용시험(일반) 경력 증명서

[구분 :일반]

[접수번호 :]

경력증명서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증 명 사 항	재 직 기 간		소속 및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상근 및 비상근여부	
	기 간	인정기간				
	(예시)2018.1.1.~2021.12.31.		4년 0월 0일	(주00 대리	보일러 설치, 정비 등	상근 주40시간
	. . . ~ .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2023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발 급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작성요령]						
※ 주업무를 에너지관리 직무를 수행 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하되, 담당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응시대상은 에너지관리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상근이란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이상 정규 근무한 형태를 말함 (이외 시간제 근무자 등은 비상근) - 비상근의 경우 근무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기간에 기재						
※ 위 증명서는 반드시 대표자의 최종 확인 후 발급자가 기재하여 증명서를 기재할 것 (서명란을 제외한 나머지란은 응시자는 기재 불가)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위 증명서를 허위 등으로 발급할 경우 합격 취소 및 고발 등 행정처분 될 수 있음						

【서식 2】 위탁업체 근무로 경력증명서의 소속회사명과 근무지(근무한 회사)가 다를 경우 등 경력증명서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 제출

경력경쟁임용시험(일반) **공업(일반기계)직렬** **근무사실 확인서**

[구분 :일반]

[접수번호 :]

- 성 명(한글/한자)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상기인은 본 기관(회사)에서 . . . 부터 . . . 까지
()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

확 인 자	직급	
	성명	(인)
	연락처	

0 0 기관장 (직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p>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응시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경력경쟁 임용시험(일반) 자료로 활용</p> <p>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경력, 자격 소지사항 등</p> <p>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경력경쟁 임용시험(일반) 자료로 활용</p> <p>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등</p> <p>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p>2023. . .</p> <p>성명: (인)</p>	<p>2023. . .</p> <p>성명: (인)</p>